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제25권 제6호, 2011년
[논 문]

J.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 & Eng.
Vol. 25, No. 6, 2011

일본 의용소방대 실태의 분석
Analysis of the Situation of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Japan

이의평

Eui-Pyeong Lee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2011. 7. 20. 접수/2011. 10. 24. 수정/2011. 12. 9. 채택)

요 약

일본은 잦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지역주민에 의한 상부상조의 조직으로서 의용소방대가 발달되어 있다. 소방서가 설치되고 소방공무원이 충분히 있는 도시에서도 지진 또는 자연재해의 대응에 대비하여 의용소방대를 육성발전시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의용소방대의 운영실태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의용소방대 운영실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할 만한 정책으로 의용소방대의 역할 검토,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수당(5년 이상 근속시 퇴직보상금 지급, 계급별 출동수당 지급) 제도 도입, 초기대응장비의 배치, 교육제도 개선 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ABSTRACT

Japan has a very advanced volunteer fire brigade system as an interdependent organization by local residents due to frequent natural disasters. Japan has fostered and developed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the national level to response rapidly and appropriately to earthquake or natural disasters even in the urban area that has sufficient fire stations and fire officers. This study analyzes the situation of operating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Japan in detail and compares the result with Korean situ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s policies which can be introduced to activate the volunteer fire brigade in Korea.

Key words : Volunteer fire brigade, Volunteer fire service, Fire service in Japan

1. 서 론

일본은 자연재해로 인한 대규모 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리적인 특수성으로 인해 관설소방을 발전시키면서도 의용소방대(일본에서는 의용소방대를 소방단(消防團)이라고 하며, 이하 소방단이라고 한다.)를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4월 기초자치소방체제에서 광역자치소방체제로 전환[1)]된 이후 관설소방이 보강됨에 따라 의용소방대는 조직력이나 운영면에서 관설소방에 밀려 관설소방을 보조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일부 도시지역에서는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2)]

E-mail: kr-fire-chief@hanmail.net

의용소방대의 역할이 점점 쇠퇴함에 따라 의용 소방대활성화대책을 연구하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으며,[3-7)] 이들 논문은 외국의 의용소방대를 분석하고 있으나 일본 소방단의 운영실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

소방이라는 용어가 조선말기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8)]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소방행정체제에 영향을 미쳐 일본의 소방단과 우리나라의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제도에 유사한 부분이 많고 일본은 관설소방을 발전시키면서도 소방단을 발전시키고 있으므로 일본 소방단의 운영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 활성화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일본 소방단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개발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안하는데 있으며, 일본 소방청에서 발표한 정책자료와 소방백서 등을 기초로 분석한다.

2. 소방단 운영 실태의 분석[9)]

2.1 소방단의 역사[10)]

일본의 소방제도가 조직화 된 것은 에도(江戶)시대(1603~1867년)로 소방단의 전신인 「정화소(町火消)」는 1718년 10월 막부가 마을(町)의 화재는 마을 사람(町人) 자신들이 진압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화소(町火消) 설치를 명령하여 동년 12월 4일 48개의 「정화소 조합(町火消組合)」이 창설되었다.

메이지(明治)정부는 「정화소(町火消)」를 1872년 4월 소방조(消防組)로 명칭을 바꾸었다. 1894년 2월 9일 전국 소방조의 관제(官制)로서 소방조규칙이 공포되어, 이 규칙에 기초하여 전국에 소방조가 설치되었다.

내무성은 1939년 1월 25일 경방단령(警防團令)을 제정하여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경방단령의 시행에 따라 정화소(町火消)의 전통을 이어받아 전국적인 민간소방조직으로 활약해온 소방조는 그 막을 내리고 이후 방호단과 합체되어 민간방공의 주축으로서 경방단이 탄생하였다.

1947년 4월 30일 소방단령(消防團令)의 공포에 따라 경방단이 폐지되고 새로이 전국 시정촌(기초자치단체)에 소방단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1948년 3월 7일 소방조직법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소방이 경찰에서 분리되어 지방자치단체소방제도가 발족하였다. 이에 따라 소방단은 각 시정촌의 임의설치로 하고 경찰기관의 관여를 완전히 끊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의 관할 하에 활동하도록 하였다.

1948년 7월 24일 소방조직법이 개정되어 소방단의 설치 등에 대해서는 소방조직법에서 규정하여 소방단령은 폐지되었다. 그 이후 현재까지 소방조직법에 근거한 소방단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2 소방단에 대한 인식[11-13)]

대도시는 관설소방이 잘 정비되어 있어 평상시 재해대응은 관설소방이 그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1995년의 한신아와지(阪神淡路) 대지진재해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재해와 같은 대규모 재해 시 관설소방력만으로는 소방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소방단은 지역과 밀착되어 있으므로 대규모 재해 시 소방단의 활동은 아주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지진이나 태풍 등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대응에 관설소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설소방과는 별도로 소방단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고 소방단은 소방력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또한 소방단원은 지역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주민으로 구성되고 지역에 밀착되어 있어 지리나 주민의 거주지 등 지역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재해 시에는 특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소방단은 평소의 훈련과 「자신의 지역은 스스로 지킨다」는 향토애호의 정신으로 무장된 민간 지역 방재력의 중심조직으로서 피해의 확대 방지나 지역주민의 안심·안전의 확보에 공헌하고 있으며, 평상시

Table 1. Comparison of Laws Related with Volunteer Fire Brigade in Korea and Japan[14,15)]

	관련법률	자치법규
의용 소방대	소방기본법	1) 의용소방대설치조례와 시행규칙, 2)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시행규칙
	제3조(소방기관의 설치등), 37조(의용소방대의 설치등), 제38조(의용소방대원의 근무등), 제39조(의용소방대원의 처우등), 제39조의2(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소방단	소방조직법	1) 소방단설치조례와 시행규칙, 2) 소방단원의 정원 임면 급여 복무 등에 관한 조례와 소방단의 배치정원규칙, 소방대원의 훈련 및 예식에 관한 규칙, 소방단원 복제규칙, 소방단원의 피복의 급여 및 대여에 관한 규칙, 소방단의 설비기자재 관리에 관한 규칙, 소방단원의 보수 및 비용변상의 지급에 관한 규칙, 3) 소방단원에 관계되는 퇴직보상금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4) 소방단원 등의 공무재해보상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5) 소방단원 대원증 규정 등이 있음
	제6조(시정촌의 소방에 관한 책임), 제9조(소방기관), 제18조(소방단), 제19조(소방단원), 제20조(소방단장), 제21조(소방단원의 책무), 제22조(소방단원의 임명), 제23조(소방단원의 신분취급등), 제24조(비상근소방단원에 대한 공무재해보상), 제25조(비상근소방단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소방단원등 공무재해보상등 책임공제등에 관한 법률	
	제3조(소방단원등 공무재해보상책임공제계약의 체결), 제4조(소방단원등 퇴직보상금지급공제계약의 체결), 제5조(계약체결 거절의 금지), 제6조(기금 또는 지정법인의 지불)	

훈련 외에 응급처치 등의 보급 지도나 주택의 방화(防火)방문의 실시, 홍보지의 발행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반응도 좋은 편이다.

또한 소규모 시정촌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비소방력인 관설소방력이 적어서 평상시 재해대응에 있어서도 소방단이 담당하는 역할은 큰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방단은 지역밀착성(소방단원은 관할구역 내에 거주 또는 근무), 요원동원력(소방단원 수는 소방직원 수의 약 6배), 즉시대응력(평상시부터 교육훈련에 의해 재해대응의 기술지식을 습득)이라는 3가지 특징을 활용하여 초기소화나 잔화처리 등을 하고 있는 외에 대규모재해 시에는 주민의 피난지원이나 재해방어 등을 하는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다.

2.3 소방단 관련 법규

Table 1은 소방단과 의용소방대 관련 법규 등을 비교하고 있다. 소방단과 의용소방대의 주요차이점을 들면, 우선 소방단에 관한 규정이 법규에서 뿐만 아니라 자체법규에서도 구체적이다. 또한 일본은 소방공무원법이 없는 대신에 소방조직법을 가지고 있으며, 소방조직법에서 관설소방기관과 소방단의 설치에 대해,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소방단원의 임용 등 신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용소방대는 시도지사 산하의 소방기관에 설치하도록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것과는 달리 소방단은 소방조직법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 산하의 소방기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소방단원등 공무재해보상등 책임공제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소방단원이 공무재해보상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2.4 소방단 조직의 현황[16)]

일본 시정촌(市町村)[i] 소방은 대별하여 (1) 소방본부 및 소방서와 소방단이 함께 있는 지역과 (2) 소방단만이 있는 지역이 있다(예외로 관설소방기관만이 있는 1개시가 있다). 관설소방(상비소방)기관이란 전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시정촌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2010년 4월 1일 현재, 802개 소방본부, 1716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다(Table 2 참조). 소방단은 2010년 4월 현재, 2,275개단으로 1개 시를 제외한 모든 시정촌에 설치되어 있으며 소방단원은 총 883,698명이다.

i 2010년 4월 1일 현재 일본 전국은 47개 도도부현(1都 1道 2府 43縣), 786市, 757町, 184村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정촌은 시(市)에 속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정촌을 말한다.

Table 2. Fire Fighting Agencies in Japan

구분		2009년	2010년
소방본부	소방본부	803	802
	소방서	1,710	1,716
	출장소	3,197	3,180
	소방직원수	158,327	158,809
소방단	소방단	2,336	2,275
	분단	22,997	22,926
	소방단원수	885,394	883,698

Table 3. Activities Conducted by Members of Fire Fighting Agencies in Japan

구분		소방직원	소방단원
화재	회수	56,594	43,349
	연인원	1,026,374	1,168,945
구급	회수	5,122,226	1,153
	연인원	15,493,811	11,219
구조	회수	79,467	1,501
	연인원	958,316	17,227
풍수해등 재해	회수	10,657	3,921
	연인원	5,8451	165,986
연습 훈련	회수	396,732	199,343
	연인원	2,435,863	4,370,285
홍보・지도	회수	354,919	85,424
	연인원	1,431,301	942,770
경방 조사	회수	465,655	15,354
	연인원	1,610,815	164,250
화재원인 조사	회수	51,961	29
	연인원	235,677	487
특별 경계	회수	101,830	76,898
	연인원	780,777	1,310,739
수색	회수	3,879	6,793
	연인원	34,231	95,201
예방 업무	회수	761124	4,602
	연인원	1,789,417	38,119
오보(誤報) 등	회수	33,166	4,058
	연인원	394,046	54,132
기타	회수	578,468	165,952
	연인원	2,288,901	1,558,340
계	회수	8,016,678	608,377
	연인원	28,537,980	9,896,800

2.5 소방단의 활동실적[17)]

소방단원의 2009년 출동현황은 Table 3과 같다. 이 통계만 보더라도 의용소방대와 달리 소방단은 관설소방기관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조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화재, 풍수해등 재해, 특별경계, 수색에서는 소방단원들이 소방직원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기본법 제37조 제1항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읍・면에 의용소방대를 둔다고 규정하여 의용소방대가 소방기관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보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Table 4는 2010년 1월 1일 현재 의용소방대의 현황, Table 5는 2009년도 의용소방대의 활동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출동현황을 비교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Table 2와 Table 3의 소방단원 수와 출동한 단원, Table 4와 Table 5의 의용소방대원 수와 활동인원을 비교해보면 소방단원이 의용소방대원보다 많이 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4. Number of Volunteer Fire Brigade and their Members in Korea[18)]

구분		계	시	읍	면
대수	계	3,412	922	495	1,995
	본대	1,585	179	230	1,176
	여성대	1,002	163	204	635
	지역대	825	580	61	184
대원수	계	96,284	25,451	19,828	51,005
	본대	51,493	7,653	10,443	33,417
	여성대	29,141	6,358	8,130	13,933
	지역대	16,350	11,503	1,291	3,619

Table 5. Activities Conducted by Members of Volunteer Fire Brigade in Korea[19)]

구분	횟수	인원
계	121,471	2,009,020
화재진압	12,043	147,511
인명구조 및 구급	2,424	18,384
화재경계근무	13,300	187,608
교육훈련	44,898	1,108,446
화재홍보	14,606	34,200
기 타	280,982	266,089

2.6 소방단의 보유시설・장비와 교육훈련

소방단 본부는 관할소방서의 청사 내에 있으며 이 본부는 재해 시 소방서와 연계하여 소방단의 활동을 파악하여 지휘・통제하고, 평상시 소방단의 운영관리를 위한 간부회의 장소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분단은 분단본부 시설(건물)을 갖추고 있으며 각종 경계활동이나 재해 시 활동거점이 되며 소형동력펌프적재차량이나 분단에 배치된 기자재 등을 격납하며, 평상시 분단회의, 응급구호 등 교육훈련 시설로 이용하며 각 분단별로 1동씩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용소방대설치조례 표준안(2010년 5월, 소방방재청)에 의해 최근 운영되고 있는 전담의용소방대를 제외하고는 의용소방대에 소방자동차 등 소방장비가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2011년 1월 1일 현재 의용소방대에 배치된 장비는 소방펌프자동차 43대가 유일하다.[20)]

Table 6은 2010년 4월 1일 현재, 일본의 소방기관과 소방단의 장비보유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소방단에 소방기관 못지않게 많은 소방차 등 장비가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재 초기진화에 필요한 소방자동차, 소형동력펌프 적재차, 동력펌프 등은 소방기관보다 소방단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도시 소재 의용소방대에는 소방장비가 거의 배치되어 있지 않음에 비해 동경도(東京都)의 중심지에 위치한 23특별구 내(23특별구 내에 58개의 소방단, 1만 6천명의 소방단원이 있음[22)])에도 990대의 동력소방펌프, 경광등과 사이렌 장치가 있는 138대의 동력펌프적재차, 들것, 이동용발전기(12 kg)가 배

Table 6. Actual Conditions of Equipment of Fighting Agencies in Japan[21)]

구분	소방기관	소방단	계
소방펌프자동차	4,002	13,572	17,574
수조부소방차	3,851	879	4,730
사다리자동차	1,233	3	1,236
화학소방차	1,028	6	1,034
구급자동차	5,967	0	5,967
지휘차	1,966	832	2,708
구조공작차	1,247	0	1,247
임야화재공작차	48	17	65
전원조명차	92	54	146
소형동력펌프적재차	474	34,819	35,293
기타 소방자동차	8,322	1,700	10,022
手引동력펌프	1,284	2,825	4,109
소형동력펌프	1,900	14,369	16,269
소방정	47	6	53
소방헬리콥터	32	0	32

치되어 있고, 휴대용무전기와 휴대용구조기구 등 각종 기자재도 배치되어 있다.

소방단원은 2009년도에 연 57,110명이 소방학교 또는 소방학교에서 출장 나온 교직원을 통해 교육훈련을 받았다. 소방단원은 각기 자신의 직업을 갖고 있으므로 소방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경우는 소방학교 교직원을 현지에 파견(파견교육이 전체교육 중 65 %를 차지함)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많은 소방학교에서 이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2.7 소방단원의 신분과 계급

소방단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 및 소방조직법에 의해 규정된 시정촌의 비상근 특별직 지방공무원(일본의 지방직공무원은 일반직과 특별직으로 구분됨)이다. 그러나 소방본부를 두지 않는 시정촌의 상근 소방단원은 상근 일반직지방공무원이다. 소방단원은 일본의 지방공무원 나아가서는 공무원 전체 중에서도 최대의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 직종이다.

소방단장 및 소방단원은 지방공무원이므로 소방단장은 소방단의 추천에 의해 시정촌의 장이 임면하며, 소방단원은 소방단을 설치하는 시정촌의 장의 승인을 받아 소방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도쿄도의 특별구가 관할하는 구역의 소방단에 있어서는 도쿄도 지사가 특별구의 연합체의 장으로서 이 권한을 행사한다.

소방단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소방단원의 정원·임면·급여·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18세 이상 건강한 사람으로 당해 소방단 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소방단원은 법령으로 정해진 지방공무원 신분이므로 공통점이 많긴 하지만 그 활동이나 임무, 대우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시정촌 조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차이점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도쿄도의 소방단원은 소방단원 임무 외에 수방임무까지를 맡고 있지만, 지방의 소방단원은 수방단원의 임무와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어 소방단원과 수방단원을 겸임하는 단원도 많다. 2009년 4월 1일 현재 전체 수방단원은 897,287명에 대해 수방단원을 겸임하고 있는 소방단원은 881,848명(약 98 %)이다.[23)]

소방단은 계급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소방단원의 계급은 소방조직법 제15조의6에 기초하여 소방청이 정하고 있는 소방단원의 계급 준칙이 있으며, 시정촌이 이 준칙에 따르고 있으므로 계급은 대략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소방단원의 계급은 단장, 부단장, 분단장, 부분단장, 부장, 반장 및 반원과 같이 최고위의 단장이하 7계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방단원교육 등에서는 반장이상을 간부단원, 단원을 일반단원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간부단원은 상급간부(단장, 부단장), 중급간부(분단장, 부분단장), 초급간부(부장, 반장)로 구분하고 있다.

2.8 보수 및 출동 수당

시정촌은 조례에 근거해 소방단원에 대해 연액보수 및 출동했을 경우의 비용 변상으로서 출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급액이나 지급 방법은 조례에 의거하므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계급과 경력에 따라 보수 및 출동수당이 다르다.

의용소방대원은 시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거하여 출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출동 시 계급이나 경력에 관계없이 지방소방사 3호봉 봉급 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다.

2.9 공무재해 보상[24)]

소방활동은 자주 위험한 상황아래에서 수행되기 때문에 소방단원이 공무에 의해 사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소방조직법의 규정에 의해 시정촌은 정령(政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단원이 공무상의 재해에 의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하고 다른 공무재해보상 제도에 준해 요양보상, 휴업 보상, 질병보상 연금, 장애보상, 개호 보상, 유족 보상 및 장제 보상의 제도가 설치되어 있다. 소방단원이 신체에 대해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하에서 소방활동에 종사하다가 이로 인해서 공무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재해 보상으로 취급해서 유족보상 등에 대해 100분의 50 이내를 가산하게 되어 있다.

2.10 소방기금의 운영[25,26)]

소방조직법, 수방법, 소방법, 재해대책기본법, 원자력재해대책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시정촌은 소방단원, 수방단원 또는 민간인(이하 「소방단원등」이라고 한다.)이 재해현장의 방재활동 등에 의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등의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해서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소방조직법 제24조, 수방법 제 6 조의 2 에 의거하여 시정촌은 소방단원과 수방단원 또는 그 유족의 복지에 관해서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소방조직법 제25조에 따라 시정촌은 소방단원이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했을 경우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사람(사망에 의한 퇴직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유족)에게 퇴직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소방단원등 공무재해 보상등

공제기금((http://www. syouboukikin.jp/), 이하 「소방기금」이라고 한다.)은 시정촌의 소방단원등 공무재해 보상 및 소방단원 퇴직 보상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방단원등 공무재해 보상책임 공제 사업 및 소방단원 퇴직보상금 지급 책임 공제 사업을 하고, 아울러 소방단원등 복지사업등을 하여 소방단원등의 소방활동, 수방활동 그 외의 방재활동과 관련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소방단원등 공무재해보상등 책임공제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11 기타

을종 소방설비사 및 병종 위험물 취급자 자격의 취득과 관련되는 특례, 퇴직 소방단원에 대한 보상, 전국소방 순직자 위령제를 하여 소방단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다.

3. 결 론

일본 소방단 실태의 분석을 통해 소방단은 법제도상 소방서와 마찬가지로 시정촌의 소방기관으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유지되는 조직으로 구성원인 소방단원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 비상근특별직 지방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역은 자신이 지킨다」는 향토애호의 정신에 기초하여 다방면에 걸친 소방방재활동을 하도록 여건이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본 소방단 실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의용소방대를 활성화하는데 참고가 될 제도들을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1) 소방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소방단은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3가지 특징(지역밀착성, 요원동원력, 즉시대응력)을 활용하여 대규모 재해 시 등에 실질적인 소방활동을 하고 있어 소방단은 필수불가결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규모 재해 시 관설소방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의용소방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은 물론 논리개발도 필요하다.

2) 소방단의 역할

소방단은 관설소방을 보조하지 않고 유사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기관이며, 소방단원은 비상근의 특별직 지방공무원이다. 소방기본법에서 의용소방대는 소방기관을 보조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수당제도

소방단원의 근속년수와 계급에 따라 퇴직보상금과 출동수당이 다르다. 의용소방대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보상금제 도입과 계급별로 출동수당을 달리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소방단에 초기대응 장비 배치

소방펌프자동차, 동력펌프적재차와 동력펌프 등 초기대응장비는 관설소방기관보다 소방단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방력이 충분하지 못한 읍면지역이나 도서지역 등에서는 소방단처럼 유사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제도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

5) 체계적인 교육과 현지출장교육 제도

기초교육, 전문교육, 간부교육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지방소방학교의 교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교육을 하고 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물론 현지에 나가 교육하는 제도도입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전국대학 소방학과 교수협의회, “소방학개론”, 동화기술, p.24(2008).
2. 박찬석, 윤명오, “의용소방대장 리더십 유형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 리더에 대한 신뢰를 매개변수로-”,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25, No.2, p.10(2011).
3. 소방방재청, “한국소방행정사”, p.83(2009).
4. 이점동, 윤명오, 최돈묵, “한국의용소방대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Vol.22, No.4, pp.97-98(2008).
5. 이점동, “한국의용소방대 운영체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방재지도자 육성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pp.32-38(2005).
6. 허남길,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pp.24-29(2007).
7. 이강일, “한국의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삼척대학교 방재기술전문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pp.39-54(2006).
8. 이선재, “의용소방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학위논문, pp.16-18(2005).
9. 이의평, “일본의용소방대 운영실태의 분석”, 화재소방학회 2011년도춘계학술논문발표회논문집, pp.276-281(2011).
10. 「東京消防庁50年のあゆみ」編纂委員会, “東京消防庁50年のあゆみ”, 東京消防庁, pp.207-210(1998).
11. 地域特性に応じた消防団員の確保方策に関する検討委員会, “地域特性に応じた消防団員の確保方策に関する報告書”, 消防庁(일본), pp.1-4(1999).
12. 新時代に即した消防団のあり方に関する検討委員会,

"新時代に即した消防団のあり方について", 消防庁(일본), pp.3-4(2003).
13. 消防団の充実強化についての検討会, "「消防団の充実強化についての検討会報告書」", 消防庁, pp.1-2(2010).
14. http://www.law.go.kr/main.html.
15. http://www.fdma.go.jp/concern/law/.
16. 消防庁(일본), "平成22年版 消防白書", pp.118-119(2010).
17. 消防庁(일본), "平成22年版 消防白書", p.142(2010).
18.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및통계", p.119(2010).
19.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p.122(2010).
20. 소방방재청,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pp.48-49(2011).
21. 消防庁(일본), "平成22年版 消防白書", p.120(2010).
22. 東京消防庁, "東京の消防", p.19(2010).
23. 消防団の充実強化についての検討会, "「消防団の充実強化についての検討会報告書」", 消防庁, p.7(2010).
24. 消防庁(일본), "平成22年版 消防白書", p.143(2010).
25. http:// www.syouboukikin.jp/.
26. 消防庁(일본), "平成22年版 消防白書", p.147(2010).